#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적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상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972 발의연월일 : 2025. 3. 14.

발 의 자 : 윤상현 · 김석기 · 강승규

김민전 • 이헌승 • 인요한

김선교 • 이인선 • 박상웅

박대출 • 박충권 • 김장겸

박수영 · 임종득 의원

(14인)

### 제안이유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을 연이어 신청하고 기각된 사실이 확인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국회 답변 및 국정조사 과정에서해당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며, 특정 법관들이 포진한 법원으로 영장을 재신청하는 등 소위 '영장쇼핑'을 시도하였음. 이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이에 대한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함.

또한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의 조직적 거짓말과 은폐 시 도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기존의 감독 및 감시 체계만으로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따라서 독 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공수처의 불법 행위 및 정치적 의도를 철저히 규명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본 법안을 제안함.

#### 주요내용

- 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수사하는 과정의 위법성 의혹을 조사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의 체포영장청구의 위법성 의혹, 국회의 국정조사에서의 허위 답변 의혹, 법원의 체포 영장 발부과정에서의 위법성 의혹 및 해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으로 규정함(안 제2조).
- 다. 대법원장은 3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후보자 3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안 제3조).
-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5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3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2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2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제6조 및 제7조).
- 마. 특별검사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

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 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 사.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5조).
- 아.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제1심은 서울중앙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함(안 제17조).

법률 제 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적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 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여 영장을 청구한 경위 및 해당 영장 기각 과정의 적법성 관련 의혹사건
  - 2. 공수처가 제1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국회 및 국정조사 과정에서 허위 답변을 하였는지 여부
  - 3. 공수처가 제1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최초의 체포영장청구가 기각 되었음에도 특정 법원에 영장을 재신청한 정황과 그 배경
  - 4.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공수처가 제1호의 사건 과 관련하여 청구한 영장을 기각 또는 발부하는 과정에서의 사법 적 적법성에 관련한 사항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

- 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의 뢰하여야 한다.
- ③ 대법원장은 서면 추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3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 ④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 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 제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 무원
  - 3.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제2호의 직에 있었던 자
  - 4.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이거나 가졌던 자
  - 5.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

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5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 소유지
  - 2. 제7조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 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 ②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 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화·조사할 수 없다.
  -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5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30명 이내로 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특별검사가 특정 검사 및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 다.

- ⑥ 관계 기관의 장이 제5항 본문의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 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4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수 있다. 이 경우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 ②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2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 ③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다.
  -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20명

-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 ⑤ 특별수사관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수사의 범위 안에서 사법경찰 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⑥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특별 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6조제7항을 각각 준용한다.
- ⑦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 로 유지하여야 한다.
- 제8조(특별검사등의 의무) ①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과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특별검사등과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제9조제3항·제4항 및 제11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

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 준용한다.

- 제9조(수사기간 등) 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준비기간 중에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특별검사는 제1항의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 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행하여져야 하고, 대통령은 수사기간 만료 전일까지 승인 여부를 특별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하되, 그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주용한다.
- 제10조(재판기간 등) ①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 제11조(사건의 처리보고) 특별검사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보수 등) 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 ②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 ③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 ④ 정부는 예비비에서 특별검사의 퇴직 시까지 특별검사등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⑤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설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3조(퇴직 등) ①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퇴직할 수 없으며,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특별검사는 전임 특별검사의 직무를 승계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 제9조의 수사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전임·후임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합산하되, 특별 검사가 사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후임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날까지 의 기간은 수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특별검사등은 제11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당연히 퇴직한다.
- 제14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 1. 제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 2. 특별검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또는 제7조제7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 3.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 4. 제8조제5항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게 준용되는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승계에 관하여는 제13조 제2항 후단을, 수사기간의 산정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준용하다.
- ③ 대통령은 특별검사보가 사망하거나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7조제2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제7조제7항에 따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수사관을 해임하거나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 할 수 있다.
- 제15조(신분보장)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제16조(회계보고 등) 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일까지

- 의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대통령에 게 서면으로 중간보고하여야 한다.
- 제17조(재판관할)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 제18조(직무범위를 이탈한 공소제기의 효력) 특별검사의 공소제기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직무범위를 이탈한 경우 그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다.
- 제19조(이의신청) ① 제2조 각 호의 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동거인, 변호인은 특별검사가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등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특별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특별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내용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
  -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고등법원은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수사기록의 열람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1.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 2.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대상 조사내용이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를 이탈하였음을 인용한다.
-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는 해당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수사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 ⑦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의 수사활동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 ⑧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와 별도로 이유를 소명한 서면으로 서울고등법원에 해당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신청할 수있고, 법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⑨ 서울고등법원이 제4항 또는 제8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 인과 특별검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20조(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 ① 제2조의 수사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에게 그 사건과 인

- 력을 인계한다. 이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는 퇴직한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임명된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과 파견받은 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한 정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과 그 법에 의하여 과견받은 공무원을 승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1조(벌칙) ①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특별검사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9조제6항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 이 법의 실효는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벌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